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87
----------	-----

2019. 10. 25.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연철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0월 17일

-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연철흠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」 제8조(사용료의 징수)의 단서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포괄적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」 제8조(사용료의 징수)의 단

## 서 삭제(안 제8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광영학)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」 제8조(사용료의 징수)에서 포괄적인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시설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“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”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### 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### 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###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의안번호	제 28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연철흙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10월 8일

#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연철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0월 8일

발 의 자 : 연철흙, 전원표, 허창원,  
송미애, 이옥규, 정상교,  
박상돈

## 1. 개정이유

- 「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」 제8조(사용료의 징수)의 단서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에서 규정하는 내용보다 포괄적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」 제8조(사용료의 징수)의 단서 삭제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관계없음.

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단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8조(사용료의 징수) 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u>다만, 도 단위 체육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조(사용료의 징수) 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&lt;삭제&gt;</p>

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제5조(전문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·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,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## 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,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  
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
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
다. 삭제 <2016. 8. 2.>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6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
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